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9.1조 목적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과 투자의 수행에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는 것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대하여 간소화되고 투명한 출입국 절차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투자)에 규정된 것에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제9.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상용 방문자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실제 소득원, 그리고 주된 이윤 발생 장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상품 판매자로서, 상품의 판매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나. 서비스 판매자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할,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대리인이자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또는
- 다. 제10장(투자)에 정의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투자자의 투자를 설립, 확

장, 점검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상업적 주재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을 말한다.

가. 기업의 설립, 취득 또는 유지, 또는

나.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신설 또는 유지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공급될 서비스에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요건을 보유할 것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법인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취득할 것

다.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

허용 당사국이란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일시 입국 신청을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독립 서비스 공급자/전문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상업적 주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기초한 자영 서비스 공급자일 것

나.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계약을 가질 것, 그리고

다. 그 자연인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인정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가지게 되는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질 것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란 공급하는 회사의 설치 또는 서비스가 기계류 또는 설비의 구매 조건일 경우, 그 기계류 또는 설비의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계약 내용인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가진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이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용과 관련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 공급이나 투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전문가**란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법령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영구적 거주의 의도가 없는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말한다.

제9.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기업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상용 방문자
- 나. 독립 서비스 공급자/전문가
- 다. 기업 내 전근자
- 라.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 또는
- 마. 계약서비스 공급자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국적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 또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9.4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제9.3조에 따라 달리 입국 요건을 갖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9-가 및 9-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자국 영역 내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포함한 양허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각 기업인의 분류에 대하여 요건과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과 제한을 명시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특정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5. 출입국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합리적이며 국내법에 부합하게 한다.

6.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입국 조건으로서 노동시장테스트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어떠한 수량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9.5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설명 자료와 관련 양식과 문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웹사이트 등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그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는 날까지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제9.6조 신속한 신청 절차

1.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승인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통보한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 입국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9.7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 또는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부여의 거부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가 아님면 제19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3.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나호에 언급된 구제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18장(제도규정), 제9.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9장(분쟁해결), 제20장(일반 규정 및 예외) 및 제21장(최종규정), 그리고 제17.2조(공표), 제17.4조(행정절차) 및 제17.5조(통보 및 정보 제공)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에 자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상용 방문자

3. 뉴질랜드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기업 내 전근자

4. 뉴질랜드의 기업 내 전근자는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5. 부록 9-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전문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할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따른다.
-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7.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분야에서는 계약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 가.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법인에 대한 서비스
- 나. 정보기술, 전자 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다. 회원 계약을 통한 한국 회계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 기술의 이전,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라. 한국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마.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 바.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 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 2)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 3) 정보 관리 서비스
 - 4) 정보 시스템 서비스, 또는
 - 5)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1. 다음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제9.4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약속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이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일반적 약속

다음의 분류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상용 방문자	모든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체류 기간은 한 해 동안 총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업 내 전근자	<p>고위 관리자 : 뉴질랜드로의 전근 신청이전에 그 고용인에 의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자연인.</p> <p>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p> <p>전문가 : 뉴질랜드 내 조직 운영의 특정 부문을 담당하거나 그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전문가. 기술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 자격요건, 그리고 그 직위에 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p> <p>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p>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	1년의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입국

상용 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그리고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에 대한 상기의 일반적 약속에 더하여, 뉴질랜드는 다음의 분야별 약속을 한다.

분야별 약속

다음의 분류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독립 서비스 공급자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계약에 기초하여 종사하는 자영 서비스 공급자)</p> <p>다음의 분류에 한정한다.</p> <p>A. 독립적인 전문가</p> <p><u>정의</u>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뉴질랜드 내에서 유효한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영 자연인.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는 다음을 보유하여야 한다.</p> <p>(i) 인정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가지게 되는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 그리고</p> <p>(ii) 6년 이상의 경력.</p> <p>1)과 2) 모두 독립적인 전문가가 그 전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¹</p>	<p>(현재 GATS/SC/62, GATS/SC/62/Suppl.1 및 GATS/SC/62/Suppl.2에 규정된 바와 같이) WTO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만, 그리고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의 입국</p>

3. 상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노사 분쟁의 경우와, 또한 선박의 선원과 관련하여서는 미양허를 유지한다.

4. 시청각 서비스에 관하여, 1987년 「이민법」 및 1999년 「이민 규정」에 근거한 뉴질랜드 이민 정책은 업무 목적의 연예인, 공연 예술가 및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비자 부여를 위한 특별 절차를 규정한다. 취업 비자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러한 신청자는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독립 기획자, 대행인 또는 제작자와 관련 공연 예술가 조합 간에 합의된 정책 지침에 따라야 한다.

¹ 이러한 자격요건은 적절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인정이 뉴질랜드 내 그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5. 모든 요건, 규정 및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현재 GATS/SC/62에 규정된) 뉴질랜드의 WTO 구체적 약속 양허표상 자연인의 주재에 대한 모든 약속은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